

<p>있는 者를 迎入할 수 있도록 3號를 별도规定하였습니다.</p> <p>이상으로 서울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條例案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委員長 朴禧柱 수고했습니다.</p> <p>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提案說明된 案件에 대하여 각각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p> <p>먼저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운영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 告)</p> <p>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p> <p>1. 위원회회부</p> <p>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서울특별시장(94.11.21) 나. 회부일자 : 94.11.22 다. 상정일자 : 제12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94.11.25)</p> <p>2. 제안설명의 요지</p> <p>가. 제안이유 원활한 광역행정수행을 위하여 자치구간 재정·역할분담 등의 분쟁에 대한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p> <p>나. 주요골자</p> <p>○조례제정 목적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p> <p>○위원회 기능 (안 제2조) 자치구 상호간, 자치구 구청장 상호간 분쟁조정, 자치구행정협의회 협의사항 조정.</p> <p>○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p>	<p>항 (안 제3조)</p> <p>다.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 ○예산조치 : 별도 조치없음 ○합의 : 합의할 필요없음 ○기타 : 조례안 (별첨) <p>3. 검토의견</p> <p>가. 법적근거</p> <p>○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분쟁조정과 자치구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여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본조례제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음.</p> <p>○지방자치법 제140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때에는 시·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제2항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조의 분쟁조정을 조정할 때는 당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분쟁조정 결정한 때 서면으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와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이행이무를 규정함.</p> <p>○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3에는 내무부장관과 그 소속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p>
---	--

(第12回－内務第1次)

<p>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동령 제47조의 4의 규정에는 위원장의 직무, 동령 제47조의 5의 규정에는 회의·의결정족수, 동령 제47조의 6의 규정에는 의견청취, 동령 제47조의 7의 규정에는 간사설치근거, 제47조의 8의 규정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수당지급근거, 제47조의 10의 규정에는 시·도지사 소속하의 지방자치단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동법시행령에 규정하지 않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p> <p>나. 주요내용</p> <p>○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6조 의견청취, 제7조 수당등의 규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140조의 2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각항에 이미 규정하고 있음.</p> <p>다만, 본 조례안에는 제8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는 규정과 제9조 운영세칙조항을 설치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완적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p> <p>다. 외국의 사례 및 타시·도 현황</p> <p>○외국의 자치단체간 분쟁조정제도는 가까운 일본에서는 '90년 현재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426개 협상협의회, 1,776개의 사실상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자치단체조합이 2,904개조합, 지사·자치성장관의 분쟁조정이 있으며, 자치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의 조정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조직이 있어 자치성과 도도부현에 각각 설치되고 있음.</p> <p>○미국에서도 지방정부간조정법, 공공이익집단 정부협의회, 광역공사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ADR제도로써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p>	<p>○내무부에서는 1994.7.21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인 각 시·도 준칙을 시달하였고, 각 시·도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11개 시·도는 9월말에 조례를 제정, 현재위원 위촉 등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경기·경북·인천 3개 시·도는 10월 31일까지 조례제정이 완료된 실정임.</p> <p>라. 결 어</p> <p>○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제정의 근거가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에 이미 규정한 내용이며, 다만, 제8조 회의록작성·비치업무와 제9조 보완규정인 운영세칙조항만 새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제정체제상으로 보아 합리적으로 사료됨.</p> <p>○내무부에서는 본 준칙을 1994.7.22 각 시·도에 시달하여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를 10월 31일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시에서는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됨.</p> <p>.....</p> <p>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다음은 第2案인 서울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報 告)</p> <p>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p> <p>1. 위원회 회부</p> <p>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서울특별시장(94.11.21)</p> <p>나. 회부일자 : 94.11.22</p> <p>다. 상정일자 : 제12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94.11.25)</p> <p>2. 제안설명의 요지</p> <p>가.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2인</p>
--	---